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6020 |
|------------|------|

발의연월일 : 2017. 3. 7.

발 의 자 : 이종명 · 홍문표 · 金成泰

송희경 · 곽대훈 · 김규환

김용태 · 김진태 · 곽상도

김태흠 · 경대수 · 윤종필

서정원 · 김종대 · 김성찬

김선동 · 홍철호 · 박명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 등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병사가 제대 후 취업 등을 통한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법률은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로서 「군인사법」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로서 중한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신규 채용)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7조(신규 채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u></p> <p><u>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병사로서 「군인사법」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u></p> <p><u>10.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u></p> <p><u>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병사로서 중한</u></p> |

| | |
|----------------|---|
| (3) • (4) (생략) | <p><u>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u> <u>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u></p> <p>(3) • (4) (현행과 같음)</p> |
|----------------|---|